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27조의3(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)</u> <u>법 제40조의3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”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</u> <u>1.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</u> <u>2. 「발명진흥법」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</u> <u>3.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</u> <u>4. 그 밖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</u>
<u><신 설></u>	<u>부칙</u> <u>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